

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(제64조의6제1항 관련)

1.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예

<도안>



<표시 예>



2.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표시방법

- 가. 인증마크에는 인증받은 인증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.
- 나. 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르고,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가로·세로를 같은 비율로 하여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.



- 다. 인증마크는 황금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여 무광 금박으로 처리하고, 신문·잡지 등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.
- 라. 인증마크는 원칙적으로 사진제판 방식 또는 슬라이드 필름에 의한 투사 방식으로 복제되어야 하고, 벡터 방식(Vector Type)의 컴퓨터 그래픽 파일을 사용하여 재생하도록 한다.